

1. 개정이유

불공정무역으로 인해 국내산업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의 구제조치인 덤핑방지관세 및 상계관세의 절차 및 요건 등에 대해 세계무역기구 규범과의 합치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성격상 비밀인 정보의 범위 확대(규칙 제15조, 제27조)

비밀로 취급해야 하는 자료 기준에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우려가 있는 것’을 추가하여 성격상 비밀인 정보의 범위를 확대

나. 이용가능한 자료 활용 절차 법제화(규칙 제15조의2, 제27조의2 신설)

1) 이해관계인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조사를 거부·방해하는 경우 등의 사유로 조사 또는 자료 검증이 곤란할 경우 활용하는 자료에 대해 활용 절차를 명확히 규정

2) 분쟁시 이해관계인의 방어권을 절차상 보장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어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준하여 필요 절차를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10. 13. ~ 11. 22.) 중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관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침해될”을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로 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①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합리적으로 확보 가능한 정보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검증이 곤란하다고 검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7일 내에 추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채택하여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통지서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2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침해될”을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로 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①무역위원회는 영 제78조 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합리적으로 확보 가능한 정보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검증이 곤란하다고 검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7일 내에 추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채택하여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영 제85조제2항에 따른 통지시에 설명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64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u>침해</u>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제15조(덤핑방지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 ----- ----- ----- <u>침해</u> 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
1. ~ 5. (생략) <u><신설></u>	1. ~ 5. (현행과 같음) <u>제15조의2(덤핑방지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①무역위원회는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합리적으로 확보 가능한 정보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u> <u>②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검증이 곤란하다고 검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7일 내</u>

제27조(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영 제78조제2항에 따라 비밀로 취급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로서 이들이 공개되는 경우 그 제출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다.

1. ~ 5. (생략)

<신설>

에 추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영 제64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채택하여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영 제71조제2항에 따른 통지 시에 설명하여야 한다.

제27조(상계조치 관련 비밀취급자료) -----

----- 침해되거나 그 경쟁자에게 중대한 경쟁상 이익이 될 -----.

1. ~ 5.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상계조치 관련 이용가능한 자료) ①무역위원회는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사절차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는 한 합리적으로 확보 가능한 정보나 자료를 통하여 확인한다.

②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영 제

78조제5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나 정보가 불충분하거나 검증이 곤란하다고 검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7일 내에 추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③무역위원회는 제2항 및 영 제78조제5항에 따라 이용가능한 자료를 채택하여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영 제85조제2항에 따른 통지 시에 설명하여야 한다.